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피해사실확인서 접수 기관 확대의 내용으로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5. 7. 00. 공포, 7. 8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보완하고, 피해주민의 신속한 금융지원 및 간접지원을 위해 피해금액을 작성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6호서식 중 “규모”를 “규모(금액)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읍·면장”을 “읍·면·동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피해사실확인서

발급번호: 제 호

피해자	주소				
	성명		생년월일		
피해 내용					
대상	단위	피해 규모(금액)	피해물의 소재지	피해 일시	재해의 종류
용도					
제출처					

위 사람이 소유(경작)하고 있던 재산에 위와 같이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이 일

신청인 : 성 명 (인)

생년월일

주소

특별자치시장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음 · 면 · 동장

귀하

위 사실을 확인함.

의
의
의

특별자치시장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

※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